
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[별지 제9호서식]

## 개인훈련계획서

※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상담원과 합의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해당되는 곳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				
훈련기관명	훈련과정명	훈련직종	훈련방법	훈련기간
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	(특화)Avionics 고장탐구기술자 향상	항공기정비 (150903)	집체 훈련	21.09.13~21.09.17

###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

1.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**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**이며,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~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※ **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,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(K-디지털 트레이닝)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**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**전액** 지원됩니다.
  - ※ **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**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**200만원을,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(K-디지털 트레이닝)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**합니다.
2. **직종평균 취업률(과거 3년 평균)에 따라 훈련비의 15%~55%를 자부담**하여야 하며,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**초과분도 본인이 부담**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**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**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은행계좌(신한, 농협)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3. **훈련장려금**은 단위기간(1개월) **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**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**훈련장려금이 지급**됩니다. 단위기간(1개월)이 종료되면 **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**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(신한, 농협)로 **직접 지급**합니다.
  - ※ **훈련장려금**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**실업자, EITC(근로장려금) 수급자** 등에게 지급됩니다.
  - ※ **실업급여 수급기간(대기기간 미포함)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**
  - ※ **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**은 훈련종료일(중도탈락 포함) 다음날부터 **30일 이내 HRD-Net에 수강평을 입력**해야 지급됩니다.
4. **대규모기업 근로자, 영세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(소득 및 매출액) 변동여부 확인**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**첫 훈련과정을 수강**하기 위해서는 **HRD-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5. **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·관리**하여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**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**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, **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**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**카드사용이 중지**됩니다. 또한, 부정출결 이후 **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**해야 하고 향후 **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
